

2021년 제1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재공고

2021년 제1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1년 5월 31일

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

근무 부서	임용 분야	임용 직급	채용 인원	근무 기간	주요업무
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 (하동사무소)	투자유치	행정6급 (일반 임기제)	1명	2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하동지구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·시행○ 하동지구 주력산업 발굴 및 투자유치 추진○ 국내외 잠재 투자자 발굴·상담 및 네트워크 관리○ 국내외 투자유치 프로젝트 및 IR(투자설명회) 업무 추진

2. 응시자격

가. 공통사항(최종시험(면접) 예정일 기준)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
- 주소지·성별·연령 : 제한 없음 ※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받은 사람
- 국 적 : 대한민국(외국인이 아닌 자)

○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○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

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
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2.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
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5.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- 5의2.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6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○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1. 공공기관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
나.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(최종시험(면접) 예정일 기준)

임용분야	자 격 요 건	
투 자 유 치	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○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○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	력	<p>【경력인정】 국내외 공공기관, 민간 기업·단체·연구소에서 투자유치 기획, 전략, 경영, 마케팅, 영업 분야 등 실무 경력</p> <p>【우대사항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하동지구 중점 유치업종*과 관련된 근무 경력 있는 사람 * 금속가공제품기타운송장바식료품비금속광물1차금속 제조업, 기타 발전업 - 영어 또는 중국어 통·번역 및 회화 능력이 있는 사람

- ※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, 학위,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(면접)시험 예정일(2021.6.30.) 기준으로 판단하며, '경력'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관련분야 최종 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(2021.5.31.)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
- ※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, 원서접수 마감일(2021.6.18.)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

3. 근거법령

- 가. 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5
- 나.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21조의3, 제21조의4
- 다. 「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」(행정안전부 예규)
- 라.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임기제공무원 인사운영규정

4. 보수수준

- 가.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아래 연봉한계액표의 임용 등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,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·능력·경력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함

나. 연봉한계액(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상한액	하한액
일반임기제 6급(상당)	76,686	51,908

※ 연봉 외 급여 :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

※ 급여는 경상남도에서 지급

5. 시험방법 및 일정

가. 시험방법

○ 1차 시험 : 서류전형
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결정
-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
<서류전형 심사기준>

평정요소	채 점 기 준
발전가능성	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통한 의지력, 성장가능성 등 평가
업무적합성	담당예정업무와 관련 분야 근무경력 적합성과 연관성 평가
우 대 사 항	장기근무 경험자, 관련학위 및 자격증 보유자 등 우대(분야별 우대요건 참고)

○ 2차 시험 : 면접시험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

▶ (평정요소)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

▶ (평가방식)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·응답

-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

※ 불합격기준 :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"하"로 평정하였거나,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"하"로 평정할 때

나. 시험일정

시험공고	원서접수기간	시험구분	시험일시	합격자발표
'21. 5.31.(월) ~ 6. 13.(일)	'21. 6. 14.(월) ~ 6. 18.(금)	서류전형	-	'21. 6. 23.(수) 예정
		면접시험	'21. 6. 30.(수) 예정	추후 별도 공고

※ 합격자 발표 :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(www.gfez.go.kr) 고시/공고에 게시.

※ 면접시험일 및 합격자 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음

6.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

가. 원서교부 : 별지1~9호 (광양경제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)

나. 접 수 처 :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지원팀(4층)

다. 접수방법 :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

-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
- 우)57741,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,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지원팀
- 우편 접수자의 경우,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 예정이며, "응시표"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
- 우편 접수 시, 응시수수료(우체국 통상환증서)는 제출서류와 동봉

7. 응시자 제출서류

-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<별지 제1호 서식> 1부
- ② 응시원서 <별지 제2호 서식> 1부

- 응시수수료 : (6급) 7천 원

※ 응시수수료는 전라남도 수입증지(우체국에서 판매), 우편 접수 시는 우편통상환
(우체국에서 판매)으로 대체 (대한민국 수입인지 사용 불가)

③ 이력서 <별지 제3호 서식> 1부

-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만 작성
-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따라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함

④ 자기소개서 <별지 제4호 서식> 1부

⑤ 직무수행계획서 <별지 제5호 서식> 1부

⑥ 최종학교 학위증서(또는 졸업증명서) 1부 ※ 해외 학위는 반드시 한글번역문 공증 첨부

- 박사학위의 경우, 석·학사 학위 학력증명서 함께 제출
- 석사학위의 경우, 학사 학위 학력증명서 함께 제출

⑦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

- 경력(재직)증명서는 근무부서, 근무기간, 직책,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,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(날인),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
※ 경력(재직)증명서 상에 담당업무 반드시 기재 확인 후 제출 (매우 중요)

- 제출된 경력(재직)증명서로 해당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 서류 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, 본인이 경력(재직)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

※ 경력(재직)증명서 상에 담당업무와 응시자격요건의 관련분야 업무 내용이 상이할 경우 "경력사실 확인 증명서<별지 제6호 서식> 추가 제출

- 비상근 근무경력의 경우 반드시 주(週)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
(프리랜서,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)

⑧ 근무여부 확인을 위한 경력 증빙서류 각 1부

①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(필수)

- 고용보험(피보험자격 내역서), 국민연금(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), 건강보험(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), 산재보험(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) 중 1종

② 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
- 제출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, 국세청의 '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' 추가 제출

⑨ 주민등록표 초본 1부(병역사항 포함 발행)

⑩ 자격(면허)증 등 1부(해당자에 한함)

⑪ 학위·연구논문 사본 등 실적 증빙서류 <별지 제7호 서식> 1부 (해당자에 한함)

⑫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<별지 제8호 서식> 1부

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<별지 제9호 서식> 1부

《응시자 유의사항》

- ①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
- ②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자료 미제출 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
- ③ **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(경력증명서는 6개월 이내)을 인정하며,**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(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에 한함) 내의 서류여야 함
- ④ **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번역본(공증필)을 첨부**
- ⑤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8. 기타 사항

가.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
- 나.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(각종 증명서)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반환해 드립니다.
- 다. 서류에 기재된 내용(학력, 경력 등)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.
- 라.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- 마.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(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원서접수일,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한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.
 - ※ 상기 사유로 재공고 시 당초 응시자는 기재출 서류로 같음
- 바.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, 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사.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임용결격사유,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면접평정 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아. 보수와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합니다.
- 자.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따라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 7일 전까지 변경사항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.
- 차.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카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▶ **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기획부 행정지원팀 ☎ 061-760-5061**